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 규정〉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1.
3. 회 부 일 : 2025. 2.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감사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7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li> <li>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li> <li>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p>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p> |

□ 감사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8조<sup>1)</sup> 및 이 법(「감사원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감사원의 주요 업무 사항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차관급 공무원으로<sup>2)</sup>, 이 법은 감사위원의

1)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임용자격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제7조)을<sup>3)</sup> 두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임용과 관련된 결격사유”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결격사유”로 분류할 수 있음.

○ 우선, 안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임용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으

-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를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 3)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로 나누어 규율하고, 일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임용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sup>4)</sup>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제3호인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에<sup>5)</sup> 따라 탄핵결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확인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조의2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제4호 및 제5호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정당원으로서 퇴직 또는 당적이탈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제6호 및 제7호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sup>6)</sup>에 후보자로 등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대통령선거에 다른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sup>7)</sup> 한 사람은 임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임용요건 및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안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용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등에 규정된 기존 결격사유를 확인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임.
- 다음으로, 안 제7조의2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결격사유”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과<sup>8)</sup> 감사위원회에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등의 겸직금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제9조·제10조)<sup>9)</sup>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입법례(「법원조직

7) 「법관인사규칙」 제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9) 「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법」 제43조)<sup>10)</sup>가 이미 유사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7조의2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 및 “공무원으로 임용”이라는 법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sup>11)</sup> 해당 법문 중 “공무원으로 임용”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sup>12)</sup>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위 문구에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선출될 권리인 피선거권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sup>13)</sup> 또한 안 제7조의2제1호에서 정하는

---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10)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1) 이는 관련 입법례인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1호도 마찬가지임.

12)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과 동일한 임용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관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단순위헌 결정되었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14)</sup>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13)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14)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과잉금지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임용 후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공직취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연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불확실한 공익 기여를 위하여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 단순위헌결정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055 |